

신문고 접수

나의 정보 관리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종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698000
접수일시	2023-12-19 16:57:19
담당자(연락처)	하중식 (044-200-7371)
처리에정일	2024-06-14 16:57:19 2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60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5-2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종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고종민원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포주민권익시설(체육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 이 있다. '병역명부가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마포구 조례와 별표에 이 민원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포구 조례와 별표에 이 민원 시설을 포함하여 병역명부가 확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마포구청, 서울시, 병무청,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다. 이 민원 시설이 병역명부가 확인 혜택이 적용되도록 해달라. 3. 우리 위원회가 귀하(신청인)의 민원신청 자료, 피신청인1(서울특별시), 2(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답변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위원회는 2024. 1. 4. 이 민원 관련 고충 해소방안에 대해 피신청인1, 2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1, 2가 조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자립형 민간위탁시설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는 시설이 아닌, '서울시 마포주민권익시설 민간위탁 공고'에 따라 피신청인2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이다. 나. 피신청인1은 「서울특별시 병역명부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조례 내용에 따라 2024. 1. 22.에 피신청인2에게 '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추진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신청인2는 해당 내용을 받아들여 2024. 9.에 계획된 '시설이용요금 조정회의' 안건으로 반영하여 병역명부가 예우대상자를 감면대상에 포함할 계획임을 피신청인2에게 확인하였다. 다. 따라서,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종민원처리지침」 제23조(합의) 제2항 "조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의'로 처리한다.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 평가 가능일시